

2023년 임금 및 보충협약 합의서

경상북도포항의료원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포항의료원분회는 2023년 임금 및 보충협약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— 합의사항 —

1. 임금협약은 다음과 같다.

- 가. 일반직 및 간호직의 기본급은 2024년 1월 1일부터 현 기본급표에서 2024년 공무원 봉급표(1직급 하향)를 적용하여 정관 제13조 (임직원 보수 등) 절차 후 지급한다.
- 나. 조리원의 기본급은 2024년 1월 1일부터 현 기본급표에서 2024년 공무원 봉급표 인상율을 적용하여 정관 제13조 (임직원 보수 등) 절차 후 지급한다.
- 다. 수술실 간호사의 특수업무장려금은 의료원 보수규정 제28조의5 (별정수당)에 특수업무장려금 월 8만원 이내를 신설하여 정관 제13조 (임직원 보수 등) 절차 후 지급하고, 수술실 간호사는 의료원의 콜 근무에 참여한다.

2. 보충협약은 다음과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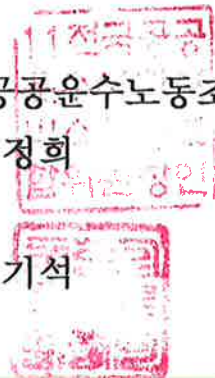
- 가. 단체협약 제10조와 관련하여 <별표 1>과 같이 개정한다.

2023년 12월 20일

경상북도포항의료원
원 장 함인석



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
위원장 한정희
포항의료원분회
분회장 김기석



<별표1>

보충협약 개정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 【조합대표자 조합활동】</p> <p>①의료원은 조합의 분회장 또는 조합원 중에서 조합 대표가 추천하는 분회원 1인에 대해서는 조합을 대표하여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며 해당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.</p> <p>②근로시간면제 배분 및 활용과 관련하여 복수노동조합 간 상호협약하여 사용한다.</p>	<p>제10조 【조합대표자 조합활동】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근로시간면제 배분 및 활용과 관련하여 <u>조합원 규모, 업무내용, 면제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복수노동조합 간 상호협약하여 사용한다.</u></p> <p>③<u>복수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배분 및 활용과 관련 상호협약되지 않을 경우, 의료원은 당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에 의거 고시된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조합별 노조원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.</u></p>

